

외화정기예금 약관

제1조 약관의 적용 범위

이 약관은 거래처와 홍콩상하이은행 (이하 “은행”)과의 외화 정기예금 거래 (이하 “예금”)에 적용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, 거치식 예금약관의 내용을 적용한다.

제2조 지급시기

이 예금은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한 때 지급한다.

제3조 예금 종류

이 예금의 종류는 정기예금으로 한다.

제4조 최저가입금액

이 예금의 최저 가입금액은 원화 1백만원에 상당하는 해당 통화금액으로 한다.

제5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개인 및 기업 고객으로 한다.

제6조 가입기간

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개인고객일 경우 최저 7일 이상 60개월 이내, 기업고객일 경우 최저 1일 이상 36개월 이내에서 월단위 또는 일단위 중에서 거래처가 선택한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 이 자

- ① 이 예금의 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하여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 후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. 그러나 예금주의 요청이 있으면 월별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②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 이후 지급 청구할 때는,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만기후 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여 지급한다.
 - 만기후 1개월 미만 경과 구간 : 예금가입당시 약정이율의 50%
 - 만기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경과 구간 : 예금가입당시 약정이율의 20%
 - 만기후 3개월 이상 경과 구간 : 해당 통화의 지급시점의 보통예금이율 적용. 단, 보통예금이율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통화의 지급시점의 외화종합예금이율을 적용

제8조 이자계산

이 예금의 이자는 국제관행에 따른 통화별 연간일수를 적용하며 예금통화의 보조단위까지 계산하며 보조단위 미만은 버린다. 통화별로 적용되는 연간일수는 상품설명서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.

제9조 적용환율 및 수수료

- ①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률로 한다.
- ② 고객이 이 예금에 예치한 외화의 자원이 원화 또는 송금에 의한 외화일 경우, 고객이 그 원금 또는 이자를 외화 현찰로 인출할 때에는 인출 시점에 관계 없이 당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수수료율표에 명시된 외화 현찰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다.
- ③ 은행은 제1항 내지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도록 한다.

제10조 중도해지

예금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 이 예금을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 전이라도 해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이자는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예금가입 당시의 약정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중도해지시점까지의 경과기간에 비례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며,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. 다만, 예금가입일로부터 1개월 미만 경과 후 중도해지 시, 해당 통화의 지급시점의 보통예금이율을 적용하며 보통예금이율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통화의 지급시점의 외화종합예금이율을 적용한다.

제11조 기한 변경

이 예금을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 전에 처음 약정한 예치기간보다 긴 예치기간의 예금으로 변경하는 경우(이하 “기한변경”이라 함)는 제 10조에 불구하고 예금일로부터 기한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7조 제1항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고, 기한변경일 이후 이율은 변경일 당시 거래처와 은행이 합의한 이율로 한다. 다만, 기한 변경한 예금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그 이자는 변경전의 예금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 10조에 따라 처리한다.

이 약관은 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” 및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